

## 응시원서

본인은 2024년 감염병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관악구보건소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응시분야	감염병예방사업		
주소	(우 )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 응시표

※응시번호		응시 분야	감염병예방사업
성명	(한글)		
2024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보건소장			

###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의약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채용분야를 기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응시자격 (자격증) - (해당자)

구 분	내 용	
전산자격증	종 류	등록번호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첨부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

○ 작성요령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2024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유의사항) 작성 시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비위면직 사실조회(취업제한여부)를 위해 관련 부서(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최종합격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4 년 월 일

성명: (서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첨부 제5호 서식> - 필요 시 채용 절차 종료 후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의약과장 귀하

###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